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송미령 (농림축산식품부 장관)
제출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산림치유의 연구개발·보급 등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추진 및 국가숲길 운영·관리 위탁을 위한 전문기관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에 전문임업인을 추가(안 제4조의3제1항 관련 별표 1)

- 전문임업인(임업후계자, 독립가)을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에 포함

나. 산림치유 연구개발 방법 및 시범사업 추진 등 신설(안 제4조의6 신설)

- 산림치유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해 필요시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용역 의뢰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, 시범사업 실시

다. 산림치유 관련 창업지원 방법 및 세부사항을 정함(안 제4조의7 신설)

- 산림치유 관련 창업을 하려는 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, 지원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고시

라. 국가숲길의 운영·관리 업무의 범위를 정함(안 제11조의5)

- 국가숲길의 운영·관리도 기존 숲길 운영·관리 업무와 같게 운영

마. 국가숲길 위탁업무의 범위 지정(안 제11조의7 신설)

- 국가숲길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 지정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의견조회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2.16. ~ 3.27.)

대통령령 제 호

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3제1항 관련 [별표 1]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바목
과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바.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
자로 선발되어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임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
있는 자

사.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독립가
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개인독립가

제4조의6 및 제4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6(산림치유 연구개발 및 보급 등) ①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의6제
3항 에 따라 연구개발 및 보급 등(이하 “연구개발등”이라 한다)을 효
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치유 분야 연구기관
또는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거나 산림치유 분야 전문가 등에게 자
문할 수 있다.

② 산림청장은 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 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
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등의 구체적인 추진

방법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4조의7(산림치유 관련 창업 지원 등) ① 법 제11조의7제1항 각 호의 지원을 하려는 경우 산림치유와 관련한 창업을 하거나 기술을 사업화 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대상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숲길관리청은 법 제23조의2”를 “산림청장 또는 숲길관리청은 법 제23조의2와 법 제23조의4제1항”으로, “숲길 운영·관리”를 “숲길(국가숲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운영·관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숲길관리청”을 “산림청장 또는 숲길관리청”으로 하며, 같은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숲길의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.

제11조의7부터 제11조의13까지를 각각 제11조의8부터 제11조의14까지로 하고, 제11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7(국가숲길 위탁업무의 범위)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국가숲길의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숲길의 이용촉진과 이용자의 안전·편의 증진을 위한 안전시설·종합안내판, 전망대 및 해설표시판 등의 시설물 설치 및 보수·관리
2. 숲길을 효율적으로 유지·관리하기 위한 실태조사
3. 숲길의 이용정보 제공을 위하여 숲길에 대한 안내센터 운영·관리

4. 그 밖에 산림청장이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 및 안전·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위탁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무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u><신 설></u>		제4조의6(산림치유 연구개발 및 보급 등)①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의6 제3항 에 따라 연구개발 및 보급 등(이하 “연구개발등”이라 한다)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치유 분야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 하거나 산림치유 분야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.		
		② 산림청장은 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 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		
		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등의 구체적인 추진방법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		
<u><신 설></u>		제4조의7(산림치유 관련 창업 지원 등) ① 법 제11조의7제1항 각 호의 지원을 하려는 경우 산림치유와 관련한 창업을 하거나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대상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		

	제11조의5(숲길의 운영·관리) ① 숲길관리청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숲길 운영·관리 업무를 수행한다.	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 시한다.
제11조의5(숲길의 운영·관리) ① 숲길관리청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숲길 운영·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.	제11조의5(숲길의 운영·관리) ① 산림청장 또는 숲길관리청은 법 제23조의2와 법 제23조의4제1항 --- 숲길(국가숲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운영·관 리 ---.	제11조의5(숲길의 운영·관리) ① 산림청장 또는 숲길관리청은 법 제23조의2와 법 제23조의4제1항 --- 숲길(국가숲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운영·관 리 ---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	1. ~ 5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숲길관리청은 지역주민·시 민단체 등이 숲길의 운영·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	③ 산림청장 또는 숲길관리청-- ----- ----- -----.	③ 산림청장 또는 숲길관리청-- ----- ----- -----.
	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숲길의 운영·관 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 이 정한다.	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숲길의 운영·관 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 이 정한다.
<u><신 설></u>	제11조의7(국가숲길 운영·관리 위 탁업무의 범위) 법 제23조의4제2 항에 따른 국가숲길의 운영·관리 에 관한 위탁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11조의7(국가숲길 운영·관리 위 탁업무의 범위) 법 제23조의4제2 항에 따른 국가숲길의 운영·관리 에 관한 위탁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	1. 국가숲길의 이용촉진과 이용	1. 국가숲길의 이용촉진과 이용

	<u>자의 안전·편의 증진을 위한</u> <u>안전시설·종합안내판, 전망대</u> <u>및 해설표시판 등의 시설물 설</u> <u>치 및 보수·관리</u> 2. <u>국가숲길을 효율적으로 유지·</u> <u>관리하기 위한 실태조사</u> 3. <u>국가숲길의 이용정보 제공을</u> <u>위하여 숲길에 대한 안내센터</u> <u>운영·관리</u> 4. <u>그 밖에 산림청장이 국가숲길</u> <u>을 보전하고 이용 및 안전·편</u> <u>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위탁하여</u> <u>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</u> <u>업무</u>												
<u>제11조의7 ~ 제11조의13 (생 략)</u> [별표 1]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(제4조의3제1항 관련)	<u>제11조의8 ~ 제11조의14 (현행 제</u> <u>11조의7부터 제11조의13까지와</u> <u>같음)</u> [별표 1]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(제4조의3제1항 관련)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등급</th><th>자격기준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.1급 산림 치유 지도 사</td><td>(생 략)</td></tr> <tr> <td>2.2급 산림 치유 지도</td><td>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 수한 사람</td></tr> </tbody> </table>	등급	자격기준	1.1급 산림 치유 지도 사	(생 략)	2.2급 산림 치유 지도	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 수한 사람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등급</th><th>자격기준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.1급 산림 치유 지도 사</td><td>(현행과 같음)</td></tr> <tr> <td>2.2급 산림 치유 지도</td><td>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 수한 사람</td></tr> </tbody> </table>	등급	자격기준	1.1급 산림 치유 지도 사	(현행과 같음)	2.2급 산림 치유 지도	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 수한 사람
등급	자격기준												
1.1급 산림 치유 지도 사	(생 략)												
2.2급 산림 치유 지도	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 수한 사람												
등급	자격기준												
1.1급 산림 치유 지도 사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
2.2급 산림 치유 지도	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 수한 사람												

사 가. 「고등교육법」 제35조에 따라 의료, 보건,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다 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 위를 취득한 사람 나. 「고등교육법」 제50조에 따른 의료, 보건, 간호 또는 산림 관련 전문학사학위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 한 후 해당 전공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. 산림치유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 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. 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 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각 자격증에 해당되는 분야 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 는 사람 마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기 사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<신설> <신설>	사 가. 「고등교육법」 제35조에 따라 의료, 보건,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다 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 를 취득한 사람 나. 「고등교육법」 제50조에 따른 의료, 보건, 간호 또는 산림 관련 전문학사학위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전공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. 산림치유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 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. 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 률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 육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각 자격증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기 사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 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바.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 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임 업후계자로 선발되어 같은 법 제 2조제1호의 임업에 3년 이상 종 사한 경력이 있는 자 사.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 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독 립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 1호의 개인독립가
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	
연 락 처	(042) 481 - 4124